

본 지침에서 특정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금지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학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 제가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의 성인 또는 피부양 성인인 경우, 과거에 또는 현재 다음에 해당하면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
- 금전적 학대를 받은 경우
-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우
- 방치된 경우
- 버려지거나 납치된 경우
- 고립된 경우, 또는
- 간병인에 의해 위협이나 고통을 피하는 데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박탈당한 경우

### 명령은 제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말 것
-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귀하에게 접근하지 말 것, 그리고
- 화기(총기), 화기 부품 또는 탄약을 소지하지 말 것. 여기에는 화기 리시버와 프레임, 그리고 리시버나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쉽게 전환될 수 있는 품목이 포함됩니다.(형법 제16531조 참조).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소지할 수 없는 품목에 관한 상세 정보는 <https://selfhelp.courts.ca.gov/restraining-orders/prohibited-item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귀하의 가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금지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외에 다음 사람이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을 대신하여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의 후견인 또는 수탁자
- 위임장의 권한에 따라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의 위임받은 대리인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사람
- 그 외 해당 구제책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

###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금지 명령 요청을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청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안관 또는 경찰관이 무료로 처리해 드립니다. 또는 등록된 처리 담당자 또는 사설 당사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고 부과되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모든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으려면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양식 [EA-100,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금지 명령 신청서](#) 및 양식 [CLETS-001, 기밀 CLETS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경우 양식 [MC-025 첨부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EA-109, 법원 심리 통지서](#)의 항목 1과 2, 그리고 양식 [EA-110, 임시 금지 명령](#)의 항목 1, 2, 3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 양식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해당 양식들은 법적 발행인이나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www.courts.ca.gov/forms](http://www.courts.ca.gov/for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는 학대가 발생한 카운티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금지 명령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셀프 헬프 센터 또는 법률 구조 협회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귀하의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서기는 법원 심리 통지서 양식에서, 그리고 귀하의 즉시 명령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사법 담당자가 서명한 임시 금지 명령서 사본에서 심리 날짜를 제시할 것입니다.

### 명령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 때때로 법원이 더 빨리 결정하기도 합니다. 서명된 법원 심리 통지서 및 임시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명령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원이 임시 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 명령은 귀하의 심리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때 법원은 명령을 계속 유지할지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명령은 최대 5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명령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귀하 또는 해당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금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명령서 사본을 “송달”(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송달인은 양식 [EA-200, 직접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송달에 도움이 필요하면 법원 서기에게 양식 [EA-200-INFO, “직접 송달 증명서이란 무엇일까요?”](#)를 요청하십시오.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체포되어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까?**

예. 서기가 알려주는 날짜에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원 심리에 증인을 동반해야 합니까?**

증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단지 귀하의 진술에 그치기 보다는 학대에 대한 증거가 더 많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래의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증인
- 선서하에 작성된 증인의 서면 진술서
- 사진
- 진단서 또는 경찰 보고서
- 손상된 재산
- 협박 편지, 이메일, 전화 메시지

법원은 심리에서 증인의 발언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심리에 증인의 진술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식 [MC-03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좋은 생각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귀하는 법원이 배정하는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카운티에 있는 무료 및 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셀프 헬프 센터에 관해서는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원 심리에서 금지 명령을 받은 자를 대면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청문회에 오면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귀하에게 발언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사법 담당자에게 말하십시오.

**누군가와 법정을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까?**

예. 심리 중에 함께 앉아 있을 사람과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법정에서 귀하를 위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 (있는 경우)만 귀하를 위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접수할 때 서기에게 법원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양식 [INT-300 신청서\(민사\)](#) 또는 현지 법원 양식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통역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selfhelp.courts.ca.gov/request-interpreto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A-109 Notice of Court Hearing		Clerk stamps date here when form is filed.
<b>1 Elder or Dependent Adult in Need of Protection</b> a. Full Name: _____ <input type="checkbox"/> Person requesting protection for the elder or dependent adult, if different (person named in item 2 of Form EA-100): Full Name: _____ Lawyer for person named above (if any for this case): Name: _____ State Bar No.: _____ b. Firm Name: _____ Address for person named above (If you have a lawyer, give your lawyer's information. If you do not have a lawyer, give information for the person requesting the order. If you want to keep your home address private, you may give a different mailing address instead. You do not have to give telephone, fax, or e-mail.):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Address: _____		Fill in court name and street address: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_____ Court fills in case number when form is filed. Case Number: _____
<b>2 Person You Want Protection From</b> Full Name: _____ The court will complete the rest of this form.		
<b>3 Notice of Hearing</b> A court hearing is scheduled on the request for restraining orders against the person in 2 : Name and address of court if different from above: Hearing Date: _____ Date: _____ Time: _____ Dept.: _____ Room: _____		
<b>4 Temporary Restraining Orders</b> (Any orders granted are on Form EA-110, served with this notice.)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for personal conduct and stay-away orders as requested in Form EA-100, Request for Elder or Dependent Adult Abuse Restraining Orders are (check only one box below): (1) <input type="checkbox"/> All GRANTED until the court hearing. (2) <input type="checkbox"/> All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below.) (3) <input type="checkbox"/> Partly GRANTED and partly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below.)		

**금지 명령을 받는 사람의 학대로 인해 빚 또는 채무가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지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재정적 학대로 인해 특정 채무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예: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동의 없이 구매 행위를 한 경우), 금지된 사람이 채무 또는 청구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판사에게 특별 결정 또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조사 결과는 채무 또는 청구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

<https://selfhelp.courts.ca.gov/EA-restraining-order> 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지역 내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현지 정보 기입]에 문의하십시오.]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금지 명령을 받은 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오직 판사만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법원에 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고 법원에 있는 동안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식 [MC-410,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MC-410-INFO, 법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방법](#)을 참조하십시오.